#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13 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 곽규택・이성권・조배숙

유상범 • 장동혁 • 주진우

송석준 • 박준태 • 정성국

김대식 · 서지영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「형법」상 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면서, 사고후 미조치, 음 주측정 불응 또는 12대 중과실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도로교통법」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금지규정 위반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11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아니한 경우"를 "아니하거나" 로, "제외한다)"를 "제외한다), 「도로교통법」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경우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안 혀 행 개 제3조(처벌의 특례) ① (생 략) 제3조(처벌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(業務上過 失致傷罪) 또는 중과실치상죄 (重過失致傷罪)와 「도로교통 법」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 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(公 訴)를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(救護)하는 등 「도로교통 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 겨 유기(潰棄)하고 도주한 경 우, 같은 죄를 범하고 「도로 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 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(운전자가 채혈 측 아니하거나-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는 제외한다)와 다음 각 호의 ---제외한다), 「도로교통법」
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12. (생 략)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다시 술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 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경

1. ~ 12. (현행과 같음)